의과대학 제위원회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설치)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제 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3조 (위원회의 구성)

1.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둔다.
2. 각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을 두며 위원 중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.
3. 각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임명과 임기)

1.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의과대학장이 위촉하며,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교수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.[개정 2018년 11월 22일]
2.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 또는 2년으로 한다.
   단, 생명윤리 및 의학연구 윤리심사(IRB)위원회 및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의 세부규정을 따른다. [개정 2012년 11월 27일]

제5조 (위원회의 회의와 의결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소위원회)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.